경상북도 중·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경상북도 중·서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「경상북도 중·서부권 행정협의회」를 구성코자 하며,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구성: 경북 중·서부권 8개 시·군
(김천, 구미, 상주, 군위, 의성, 고령, 성주, 칠곡)

○ 주요기능

-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 설정
- 경북 중·서부권 개발을 위한 국·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
- 경북 중·서부권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자치단체별 각종 축제·행사 참여 등 교류활성화
- 기타 협력사업 공동대응 등

○ 회의개최: 정기회의 연 2회,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

○ 분 담 금: 3백만원

4. 참고사항

가. 협의회 규약(안)

나. 관련법령: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

5. 검토의견

○ 본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 근거하여 경북 중·서부권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관련된 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조직, 처리사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내용으로는 경북 중·서부권 지역인 김천시, 구미시, 상주시, 군위군, 의성군, 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 등 8개 시·군의 자치단체로 협의회 구성(안 제2조), 중·서부권 개발 국·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,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처리사무(안 제5조), 연 2회 정기회 개최(안 제7조), 협의회 운영비 경비 부담(안 제12조)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중·서부권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규약안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